

## 제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0. 1. 14.(목) 10:00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  
이경자 부위원장  
송도균 위 원  
이병기 위 원  
형태근 위 원 (5인)
4. 불참위원 : 없 음
5. 회의내용
  - 가. 성원보고
  - 나. 국민의례
  - 다. 개회선언
  - 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  - 마. 전차회의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1) (재)극동방송에 대한 외국자본 출연 승인에 관한 건 (2010-01-001)

-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(재)극동방송이 미국 극동방송으로부터 2010년도에 미화 80만달러(약 9.4억원)를 출연 받는 것을 승인키로 의결함

※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으나,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·체육·종교·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음(방송법 제14조제1항)

2) 의사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서면결의, 서면보고 및 내부위임 처리방안에 관한 건 (2010-01-002)

- 김정렬 의안조정팀장으로부터 의사운영 효율화를 위한 안건 처리 개선 방안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보고받고,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의사운영 효율화를 위한 안건 처리방안 개선

가. 서면결의 추가

- 회의운영규칙 제14조(서면결의) “토론을 요하지 않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”의 대상 업무를 추가하고, “경미한 안건”도 서면결의 대상에 신설 (회의운영규칙 개정)

< 서면결의 추가 대상 >

- ① 방송법상 既승인받은 IPTV 콘텐츠사업자 승인 (신규승인 제외)
- ② 방송광고시간 법규 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
- ③ 의무편성비율 법규 (방송광고 경우 제외) 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
- ④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·소유, 양수·합병 인가와 SO의 법인합병 관련 변경 허가·최대액 출자자 등 변경승인으로서 양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
- 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 시정명령 처분
- ⑥ 방송심의 제재처분의 재심청구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 처리
- ⑦ 데이터방송 PP 재승인·변경승인 (신규승인 제외)
- ⑧ 상호접속 등 협정 인가
- ⑨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기간통신사업자 허가
- ⑩ 시청자불만 처리결과에 따른 제재조치 중 주의 또는 경고
- ⑪ 고시 및 위원회 규칙 중 단순한 자구 수정, 서식 변경, 일몰기한의 연장 등 경미한 사항 개정

나. 서면보고 도입

- 보고안건도 異見이 없어 토론이 불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보고를 도입 (회의운영규칙 개정)

※ 부득이한 경우란 차기 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를 의미

다. 내부위임 확대

- 방통위 설치법 제12조제1항 및 방송법 제2조에 따라,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“중계유선방송사업자”, “전광판방송사업자”, “음악유선방송사업자”의 허가·승인·등록 업무는 위원장에 위임 (위임전결세칙 개정)

※ 방통위 설치법 제12조(심결사항)제1항 : 2. 방송사업자의 허가·재허가·승인·등록·취소

※ 방송법 제2조(용어의 정의) : 3. 방송사업자라 함은 지상파방송사업자, 종합유선방송사업자, 위성방송사업자, 방송채널사용사업자,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말함

②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

- 경미한 안건으로 서면결의 대상을 확대하고, 일상적·반복적·경미한 안건 중 위원회 의결로써 서면결의 대상을 정하도록 명확화 (제14조제1항)
- 서면보고 신설 (제14조의1) 등

사. 보고사항

**1)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입법추진 현황 및 「2010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입법 계획」에 관한 사항**

- 정종기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방통위 소관 법률의 2009년도 입법추진 현황과 방송법, 전기통신사업법, 전과법 등 6개 법률안의 2010년도 입법계획을 보고받고, 원안대로 접수하되 가급적 조속히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함

< 2010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입법계획의 주요내용 >

| 법안명   | 주요 내용  | 추진 일정   |
|---|--|---|
| 방송법<br>(일부 개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등록제도 폐지<br>· 중계유선 변경허가 사항의 신고제 전환<br>·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실시결과 제출 의무조항 삭제  | · 법제처제출 : 10월<br>· 국회제출 : 12월<br>· 시행 : 공포 후 6월 |
| 인터넷<br>멀티미디어<br>방송사업법<br>(일부 개정)                | · 영업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 부과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근거 마련  | · 법제처제출 : 10월<br>· 국회제출 : 12월<br>· 시행 : 공포 후 6월 |
| 전기통신사업법<br>(일부 개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장애인·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의 명확한 근거마련<br>· 전화번호 변작금지 대상을 전화에서 문자메시지까지 확대<br>· 금지행위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의 고시 위임 근거 마련                 | · 법제처제출 : 10월<br>· 국회제출 : 11월<br>· 시행 : 공포 후 6월 |
| 전파법<br>(일부 개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주파수 사용승인 및 재승인 심사기준, 변경승인 근거 등 마련<br>· 주파수 할당 취소, 재할당 거부 또는 지연의 경우 이용자 보호 특례규정 마련  | · 법제처제출 : 10월<br>· 국회제출 : 11월<br>· 시행 : 공포 후 6월 |
| 정보통신망<br>이용 촉진 및<br>정보보호 등에<br>관한 법률<br>(일부 개정) | · 사업자가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대리점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규정 마련<br>· 본인확인 정보의 유출방지 조치 및 보관기간에 대한 명시적 근거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법제처제출 : 10월<br>· 국회제출 : 12월<br>· 시행 : 공포 후 6월 |
| 정보통신<br>공사업법<br>(일부 개정)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 업무 수행자 개선<br>·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시행령에 위임<br>·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관리 등의 기능(6개 사무)을 지방 이양 | · 법제처제출 : 7월<br>· 국회제출 : 9월<br>· 시행 : 공포 후 6월   |

**2) 「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**

○ 최재유 융합정책관으로부터 건축물에 가공(架空)으로 인입되는 사업자 선로설비의 난립 해소, 건축물의 지하층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구축, 구내통신망 고도화 등을 위한 「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 일부 개정령안을 보고받고, 원안대로 접수함

○ 주요 내용

- ① 옥외회선의 건축물 지하인입 의무화 및 계약해지 후 가공인입선로의 철거조항 신설 (안 제18조)
- ② 건축물 지하층에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설치조항 신설(안 제17조제2항제2호)

- ③ 구내통신 회선으로 광섬유케이블의 선택적 설치기준 도입(안 별표 3, 제3조제22호 및 제23호)
- ④ 업무용 건축물의 층구내통신실을 동일층에 2개 이상으로 분리설치를 할 수 있게 하고, 구내통신실의 시건장치, 실효면적,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면적의 추가 등 구내통신실 면적확보기준 정비(안 별표 1, 별표 2)
- ⑤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기본 설치조건 신설(안 제1조, 제21조의2)
- ⑥ 기타 개정사항
  - 지하 건축물뿐만 아니라 지상 건축물까지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장소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, 이동통신사업자가 운용하는 케이블과 안테나는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가 아니므로 해당 조항에서 삭제(안 제3조제15호)
  - 「전기사업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전압구분과 동일하게 '특별고압'을 '특고압'으로 용어를 변경하고,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(안 제3조제21호, 제11조)
  -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설치대상 중 도로법상의 규제를 받는 지하도, 터널, 지하상가 및 주차장 등 시설의 근거조항을 명확히 규정(안 제17조제2항제1호)
  - 집중구내통신실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용설비에 이동통신을 위한 장비가 포함되며, 층구내통신실에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 위주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명확히 규정(안 제19조제1호)
  - 화재대책 외에 수해, 풍해, 동결, 지진 등 다양한 대책이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'화재대책'을 '화재대책 등'으로 변경(안 제22조제1항제1호)

### 3) 「제2의 인터넷 붐 조성을 위한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 기본계획」에 관한 사항

- 내용을 보완하여 차후에 다시 보고받기로 함

### 4) 2010년도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전략에 관한 사항

- 백기훈 국제협력관으로부터 2010년도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, 원안대로 접수함

o 주요 내용

① '선택과 집중'에 의한 거점국가 역점 진출

- '09년 4대 전략품목(WiBro, DMB, IPTV, 방송콘텐츠)은 브로드밴드를 추가하여 5대 전략 품목으로 확대하고, 22개 거점국가는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25개국으로 조정
- 아시아의 인도, 아프리카의 남아공, 남미의 브라질, 유럽의 터키, 대양주의 호주 등 대륙별 핵심 전략국가 진출에 지원역량 집중
- 업체수요, VIP 순방, 국제행사(남아공월드컵) 등과 연계하여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로드쇼 및 쇼케이스 실시
- 거점국가에서 전략품목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파일럿 프로그램 추진 등 정부 컨설팅을 강화하여 국내기술의 도입 및 상용화 유도

② '산업체 동반진출' 강화를 통한 시너지 제고

- 해외 동반진출 협력 및 조정 역할을 주도하도록 업체 최고 책임자로 「해외진출추진위원회(의장 : 방통위 위원장)」 구성·반기별 운영
-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「방송통신해외진출지원협의회(의장 : 국제협력관)」에 중소 부품업체 신규 참여 확대, '브로드밴드 분과위' 신설 등 업체 저변 확대
- 동반 진출시 시너지가 기대되는 연관 서비스(예 : 브로드밴드+IPTV+방송콘텐츠)의 패키지 진출로 진출 국가 상황에 맞춤형으로 대응
- ※ 대기업·중소부품업체, 방송통신사업자·제조업체간의 동반진출을 지속적으로 유도
- 지경부, 문화부, 행안부 등과 전략품목의 해외 동반진출 협력을 위해 정기적인 협의 및 공조체제 구축

③ 중소기업 지향 해외진출 '컨설팅 체계' 구축

- 「방송통신해외진출시스템(CONEX)」의 심층적, 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하고, 거점국별 종합적인 시장정보를 제공
- KOIRA, NIPA(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), NIA(한국정보화진흥원) 등 각 기관별 해외정보 제공 시스템과 CONEX 시스템을 연계하여 원스톱 정보 제공
- CONEX에 On-line 상담창구를 개설하고, KISA에 해외진출 Off-line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

④ 방송통신 'ODA 확대'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강화

- 개도국 전문가 초청연수 확대('09년 : 324명 → '10년 : 400명), 극빈국 방송장비 지원 확대 ('09년 : 2억원 → '10년 : 5억원) 등 방통위 ODA 사업 확대
- 방송통신 분야의 ODA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KOICA에 제안하여, KOICA의 ODA 사업을 활용한 방송통신분야 무상원조 규모 확대 추진
- 기재부, 수출입은행, 수출보험공사 등과 협조하여 방송통신 분야 EDCF 지원 확대 등 금융 지원 강화
- EDCF 자금의 운용·관리를 심의하는 「기금운용위원회(위원장 : 기재부장관)」 위원으로 방통위 위원장의 참여 추진

⑤ '정부 간/국제기구 협력 강화'로 해외 진출 기반 확대

- 거점국 정부와 고위급 회담 또는 국장급 정책 협의회 개최를 추진하여 협력관계 강화 및 정책정보 조기 지원(국제회의 적극 활용)
- '14년 ITU 전권회의를 성공적으로 유치('10. 10월)하고, G20 정상회의('10. 11월) 시 방송통신 서비스 시연, 전시회 및 컨퍼런스를 개최
- 국제기구 의장단 진출 확대 및 국제 표준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ITU, APT, OECD 등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 및 입지 강화

※ '09년 현재 ITU에 의장 2명, 부의장 12명, OECD에 부의장 5명 진출

아. 기 타

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0. 1. 21(목)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1:55)